

의안번호	제 380 호
의 결 연 월 일	2012년 9월 일 (제 314 회)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12년 8월 31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80
----------	-----

제출연월일 : 2012. 8. 31.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본청 내 한시기구 설치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인력 중 일부를 교과부로 부터 승인 받은 한시정원으로 책정하고, 2012. 7. 1.일 자로 부칙에 의해 이미 개정된 정원 총수를 본칙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청 내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한시정원 5명 책정

1) 방과후학교지원단(시행일~2015.2.28.) 1명

2)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시행일~2015.8.31.) 4명

나. 부칙에 의해 개정된 정원 총수를 본칙에 반영

1)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2,919명 → 2,898명, 세종시 편입 △21명

3.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 붙임과 같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합 의 : 해당부서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012. 8. 17. ~ 2012. 8. 28.
- 2)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음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919명”을 “2,89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912명”을 “2,891명”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한시정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한시정원은 5명으로 하고,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제5조의 한시정원 5명 중 1명의 존속기한은 2015년 2월 28일까지로 하고, 4명의 존속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2,919명</u> 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 <u>2,898명</u>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	2. ----- -----
각급학교 : <u>2,912명</u>	----- : <u>2,891명</u>
<u><신 설></u>	제5조(한시정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한시정원은 5명으로 하고,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2698호, 2011.3.7.]

제6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정원의 관리) ①교육감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표준정원의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의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준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교육감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당해 시·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 또는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기타 단체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제17조(한시정원) ①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한시정원을 둘 수 있다.

②한시정원을 책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은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소멸된다.

④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하여 조정할 수 없다.

⑤한시정원의 정수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당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본청 내 한시기구(방과후학교지원단,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설치에 따른 한시정원 책정

2. 비용 발생 요인

- 지방공무원 한시정원 5명 승인에 따른 인건비

3. 관련조문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7조(한시정원) ①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한시정원을 둘 수 있다.
②한시정원을 책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은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소멸된다.
④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하여 조정할 수 없다.
⑤한시정원의 정수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당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1) 방과후학교지원단: 1명(4급)

※ 존속기한: 2012.10. 1.(예정)~2015.2.28.

- 2)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4명(4·5·6·7급 각1명)

※ 존속기한: 2012.10. 1.(예정)~2015.8.31.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항목			연간 인건비 추계		연도별 인건비 추계				
			산출기초 (‘12년 세입·세출예산서)	계	2012년 (3/12)	2013년 (12/12)	2014년 (12/12)	2015년 (8/12)	합계
방과후학교지원단	4급 (1명)	봉급(연봉제)	5,775,300원×12월=	69,304	17,326	69,304	69,304	11,551	167,485
		직급보조비	400,000원×12월=	4,800	1,200	4,800	4,800	800	11,600
		정액급식비	130,000원×12월=	1,560	390	1,560	1,560	260	3,770
		소계	75,664	18,916	75,664	75,664	12,611	182,855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4급 (1명)	봉급(연봉제)	5,775,300원×12월=	69,304	17,326	69,304	69,304	46,203	202,137
		직급보조비	400,000원×12월=	4,800	1,200	4,800	4,800	3,200	14,000
		정액급식비	130,000원×12월=	1,560	390	1,560	1,560	1,040	4,550
		소계	75,664	18,916	75,664	75,664	50,443	220,687	
	5급 (1명)	봉급	3,811,135원×12월=	45,734	11,434	45,734	45,734	30,489	133,391
		정근수당	3,811,135원×2월×50%=	3,812	-	3,812	3,812	3,812	11,436
		정액급식비	130,000원×12월	1,560	390	1,560	1,560	1,040	4,550
		시간외근무수당	10,486원×10시간×12월=	1,259	315	1,259	1,259	839	3,672
		직급보조비	250,000원×12월=	3,000	750	3,000	3,000	2,000	8,750
		소계	55,365	12,889	55,365	55,365	38,180	161,799	
	6급 (1명)	봉급	3,121,089원×12월=	37,454	9,364	37,454	37,454	24,969	109,241
		정근수당	3,121,089원×2월×50%=	3,122	-	3,122	3,122	3,122	9,366
		정액급식비	130,000원×12월	1,560	390	1,560	1,560	1,040	4,550
		시간외근무수당	8,943원×10시간×12월=	1,074	269	1,074	1,074	716	3,133
		직급보조비	155,000원×12월=	1,860	465	1,860	1,860	1,240	5,425
		소계	45,070	10,488	45,070	45,070	31,087	131,715	
	7급 (1명)	봉급	2,210,893원×12월=	26,531	6,633	26,531	26,531	17,688	77,383
		정근수당	2,210,893원×2월×50%=	2,211	-	2,211	2,211	2,211	6,633
		정액급식비	130,000원×12월	1,560	390	1,560	1,560	1,040	4,550
		시간외근무수당	8,078원×10시간×12월=	970	243	970	970	647	2,830
		직급보조비	140,000원×12월=	1,680	420	1,680	1,680	1,120	4,900
		소계	32,952	7,686	32,952	32,952	22,706	96,296	
합계				284,715	68,895	284,715	284,715	155,027	793,352

※ 방과후학교지원단의 2015년 인건비는 종료시점(2015. 2.28.)까지 2월분만 계상

다. 재원조달방안: 보통교부금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6. 작성자 : 행정관리국 행정과장 이문재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2년)	2차년도 (2013년)	3차년도 (2014년)	4차년도 (2015년)	계
세 입		68,895	284,715	284,715	155,027	793,352
보통교부금		68,895	284,715	284,715	155,027	793,352
세 출		68,895	284,715	284,715	155,027	793,352
정규직인건비		68,895	284,715	284,715	155,027	793,352
재원 조달		68,895	284,715	284,715	155,027	793,352
의존 재원	소 계	68,895	284,715	284,715	155,027	793,352
	국고보조금					0
	보통교부금	68,895	284,715	284,715	155,027	793,352
	특별교부금					0
자체 수입	소 계					0
	자체수입					0
지방채						0
기 금						0
기타(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0